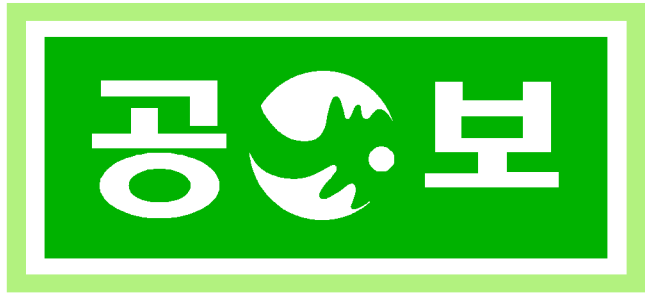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공 보	기 관 의 장

제 967 호 2015. 9. 14. (월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178호[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61호소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179호[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신천2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]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180호[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중산1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] 8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181호[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중산2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] 1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182호[도로명주소 고시] 1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183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16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184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] 18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-185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] 19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-812호[화봉시장 인정시장 인정 공고] 20

안 내	○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	--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6 행정7126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- 178호

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61소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61소공원)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61소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09. 14.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1.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 정 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61	61소 공원	소공원	북구 당사동 92-1번지일원	3,754	-	3,754	2005.03.24. (울고 제106호)	

2.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

가. 총괄조서

구 분	부지면적(m ²)	구성비(%)	비고
총 계	3,754	100.00	
시설면적	719.3	19.16	
녹지면적	3,034.7	80.84	

나. 시설계획 결정 조서

구 분	면 적(m ²)	건축면적(m ²)	건축연면적(m ²)	비고
총 계	3,754.0	-	-	
시설면적	719.3	-	-	
도로 및 광장	665.3	-	-	
운동시설	54.0	-	-	
녹지	3,034.7	-	-	

■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결 정 사 유
61	61소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92-1번지 일원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휴식과 산책 운동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 • 61소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.

다. 세부시설조서

시 설 구 분	번 호	시 설 명	부지면적 (㎡)	시설율(%)	건축면적(㎡)	비고
공 원 면 적			3,754.0	100.00		
공 원 시 설			719.3	19.16		
도로 및 광장	소 계		665.3	17.72		
	1	입구광장	71.5	1.90		
	2	휴게광장	154.7	4.12		
유희 시설	소 계		54.0	1.44		
	3	체력단련시설	54.0	1.44		
	3-1	체력단련시설 1	31.2	0.83		
	3-2	체력단련시설 2	22.8	0.61		
녹지	소 계		3,034.7	80.84		
	녹 지		3,034.7	80.84		

3.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: 게재생략

(북구 공원녹지과 및 도시행정과에 비치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- 179호

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신천2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신천2공원)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신천2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09. 14.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1.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223	신천2 공원	어린이 공원	북구 신천동 285번지일원	1,500	-	1,500	1990.12.6. (경고 제408호)	

2.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

가. 총괄조서

구 분	부지면적(m ²)	구성비(%)	비고
총 계	1,500	100.00	
시설면적	818.3	54.55	
녹지면적	681.7	45.45	

나. 시설계획 결정 조서

구 분	면 적(m ²)	건축면적(m ²)	건축연면적(m ²)	비고
총 계	3,754.0	-	-	
시설면적	818.3	-	-	
도로 및 광장	141.8	-	-	
휴양시설	33.0			
유희시설	643.5			
녹지	681.7	-	-	

■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결 정 사 유
223	신천2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85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어린이들의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,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 • 신천2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.

다. 세부시설조서

시 설 구 분	번 호	시 설 명	부지면적 (㎡)	시설율(%)	건축면적(㎡)	비고
공 원 면 적			1,500.0	100.00		
공 원 시 설			818.3	54.55		
도로 및 광장	소 계		141.8	9.45		
	도 로		22.8	1.52		
	1	입구광장	119.0	7.93		
	1-1	입구광장1	61.0	4.06		
	1-2	입구광장2	58.0	3.87		
휴양 시설	소 계		33.0	2.20		
	2	휴게쉼터	33.0	2.20		
유희 시설	소 계		643.5	42.90		
	3	어린이놀이터	302.5	20.17		
	4	모래놀이터	230.0	15.33		
	5	언덕놀이터	111.0	7.40		
녹 지			681.7	45.45		

3.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: 게재생략

(북구 공원녹지과 및 도시행정과에 비치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- 180호

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중산1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중산1공원)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중산1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09. 14.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1.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218	중산1 공원	어린이 공원	북구 중산동 928번지일원	1,500	-	1,500	1990.12.6. (경고 제408호)	

2.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

가. 총괄조서

구 분	부지면적(m ²)	구성비(%)	비고
총 계	1,500	100.00	
시설면적	784.3	52.29	
녹지면적	715.7	47.71	

나. 시설계획 결정 조서

구 분	면 적(m ²)	건축면적(m ²)	건축연면적(m ²)	비고
총 계	1,500.0	-	-	
시설면적	784.3	-	-	
도로 및 광장	417.5	-	-	
휴양시설	76.8			
유희시설	290.0			
녹지	715.7	-	-	

■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결 정 사 유
218	중산1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28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어린이들의 건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,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 중산1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.

다. 세부시설조서

시설구분	번호	시설명	부지면적 (㎡)	시설율(%)	건축면적(㎡)	비고
공 원 면 적			1,500.0	100.00		
공 원 시 설			784.3	52.29		
도로 및 광장	소 계		417.5	27.84		
	도 로		98.3	6.56		
	1	입구광장	145.5	9.70		
	1-1	입구광장1	47.5	3.17		
	1-2	입구광장2	45.0	3.00		
	1-3	입구광장3	53.0	3.53		
	2	휴게광장	173.7	11.58		
휴양 시설	소 계		76.8	5.12		
	3	휴게쉼터	76.8	5.12		
	3-1	휴게쉼터1	30.3	2.02		
	3-2	휴게쉼터2	46.5	3.10		
유희 시설	소 계		290.0	19.33		
	4	어린이놀이터	290.0	19.33		
녹 지			715.7	47.71		

3.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: 게재생략

(북구 공원녹지과 및 도시행정과에 비치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- 181호

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중산2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중산2공원)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중산2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09. 14.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1.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219	중산2 공원	어린이 공원	북구 중산동 67-1번지일원	1,343	-	1,343	1990.12.6. (경고 제408호)	

2.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

가. 총괄조서

구 분	부지면적(m ²)	구성비(%)	비고
총 계	1,343	100.00	
시설면적	778.9	58.00	
녹지면적	564.1	42.00	

나. 시설계획 결정 조서

구 분	면 적(m ²)	건축면적(m ²)	건축연면적(m ²)	비고
총 계	1,343.0	-	-	
시설면적	778.9	-	-	
도로 및 광장	84.0	-	-	
휴양시설	197.4			
유희시설	497.5			
녹지	564.1	-	-	

■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결 정 사 유
219	중산2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7-1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어린이들의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,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 • 중산2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.

다. 세부시설조서

시 설 구 분	번 호	시 설 명	부지면적 (㎡)	시설율(%)	건축면적(㎡)	비고
공 원 면 적			1,343.0	100.00		
공 원 시 설			778.9	58.00		
도로 및 광장	소 계		84.0	6.25		
	1	입구광장	84.0	6.25		
	1-1	입구광장1	43.0	3.20		
	1-2	입구광장2	41.0	3.05		
휴양 시설	소 계		197.4	14.70		
	2	휴게마당	197.4	14.70		
유희 시설	소 계		497.5	37.05		
	3	어린이놀이터	238.5	17.76		
	4	비로놀이터	259.0	19.29		
녹 지			564.1	42.00		

3.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: 게재생략

(북구 공원녹지과 및 도시행정과에 비치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- 182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9월 14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도담길 29-1외 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 241 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9. 1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삼전동 442-23	울산광역시 북구 삼전동길 29-1(삼전동)	2015-09-14	2015-09-14	2011-08-16	
2	울산광역시 북구 김동산여지구 698 9L	울산광역시 북구 신해중앙1로 125(신해동)	2015-09-14	2015-09-14	2014-05-07	
3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883 4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35(매곡동)	2015-09-14	2015-09-14	2015-02-02	
4	울산광역시 북구 포수지구 68 6L	울산광역시 북구 수동2길 4(계동)	2015-09-14	2015-09-14	2013-12-30	
5	울산광역시 북구 동산동 1265-4	울산광역시 북구 중앙산업로 28(중산동)	2015-09-14	2015-09-14	2015-02-02	
6	울산광역시 북구 동산동 1265-1	울산광역시 북구 중앙산업로 12(중산동)	2015-09-14	2015-09-14	2015-02-02	
7	울산광역시 북구 장정명천지구 368 2-2L	울산광역시 북구 고린로 204-1(장정동)	2015-09-14	2015-09-14	2001-03-22	
8	울산광역시 북구 전곡동 874-2	울산광역시 북구 음림길 77-1(선곡동)	2015-09-14	2015-09-14	2004-08-09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- 183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9월 14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티3길 7-1(염포동)외 3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i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5. 9. 14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중점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3길 7-1(염포동)	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133	2015-09-14	건축물 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더덕골길 74(상인동)	울산광역시 북구 상인동 909	2015-09-14	건축물 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용비위1길 20(당시동)	울산광역시 북구 당시동 382	2015-09-14	건축물 멸실	
4	울산광역시 북구 송내5길 33(화봉동)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38-6	2015-09-14	건축물 멸실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-184호

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9월 1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매곡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동백예술단 김태*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****-**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토지의 점용 (2015 찾아가는 문화공연)
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신천동 745-118번지

나. 면적 : 120㎡
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

2015. 10. 18. ~ 2015. 10. 18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-185호

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9월 1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시례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토지구획정리지구 63B2L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(전주보강장치 이설)
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

- 시례동 608-46번지

- 시례동 608-6번지

나. 면적

- 일시 : 4㎡

- 영구 : 2㎡
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

가. 일시 : 2015. 9. 14. ~ 2015. 9. 15.

나. 영구 : 2015. 9. 14. ~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5--812호

화봉시장 인정시장 인정 공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시장을 인정시장으로 공고합니다.

2015 년 9 월 14 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- 아 래 -

- 시 장 명 : 화봉시장
- 대 표 자 : 김 진 환
- 소 재 지 : 울산광역시 복구 상방로 94
- 시장면적 : 토지면적(2,582㎡)
건물연면적(2,582㎡)
점포수(50개)